

# 교원업적평가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51조에 의거 교원의 교육▪연구▪봉사활동에 관한 업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평가영역 및 기준)**교원의 업적은 교육업적, 연구업적, 봉사업적의 3개영역으로 구분 한다.

1. 교육업적: 교육업적의 평가는 수업담당 실적(책임시수 비율), 휴강 및 보강, 강의 계획서 제출, 성적 제출, 학칙에 의한 성적평가, 강의평가 및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적을 의미한다.

2. 연구업적

가. 인문·사회계열 교원의 연구업적은 <교원인사규정> 제6장 제38조 1항에서 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한하며, 그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다.

단독논문 주저자 국제전문학술지 200% 국내전문학술지 100%

2인논문 주저자 국제전문학술지 150% 국내전문학술지 60%

2인논문 교신저자 국제전문학술지 100% 국내전문학술지 40%

(예능계열 교원의 논문도 동일하게 적용)

나. 음악분야에 속한 교원의 연구실적은 공연 실적으로 평가하며, 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

(가) 국내의 대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도시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된 장소에서의 독창회, 독주회, 개인발표회 및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회는 100%, 전곡 중주, 전곡 중창 또는 이에 준하는 작품발표회는 70%를 인정하고, 2인 공동발표회는 50%를 인정한다. 국외에서의 연주일 경우, 공인된 정상급 단체의 초청 공연과 이에 준하는 연주일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.

(나)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가지는 단체 또는 나호 (가)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인정된 종합연주회의 주연 및 협연 50%, 오페라 및 오라토리오의 주연, 연출, 또는 이에 준하는 작품 발표는 100%를 인정하며, 오페라의 조연은 50%를 인정한다.

(다) 공인된 국제음악제에 독주자, 독창자, 협연자 또는 발표자로 초대되어 연주했을 때에는 70%를 인정한다.

(라) 나호 (가)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인정된 종합연주회의 독주, 독창, 중주, 중창, 작품발표 또는 편곡은 15%를 인정한다. 단, 관현악단, 합창단의 단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

(마) 나호 (가)의 100%에 해당하는 발표회의 전곡 반주 또는 지휘는 30%를 인정하고, 50%에 해당하는 발표회의 전곡 반주 또는 지휘는 15%를 인정한다.

(바) 광역시급 이상의 시립단체,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정상급 단체의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는 위 해당 항목 실적물의 100%를 인정한다.

(사) 동일 내용의 연주(개인발표회에 한함)인 경우, 두 번째 연주는 해당점수의 50%를 인정한다.

(아) 교회 및 기타 장소에서 발표된 것은 순수한 예술발표에 한해서 그 발표자 및 발표 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(예배 또는 선교행사 등의 일부로 발표 된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).

(자) 실용음악 공연의 경우, 단독공연은 공연 전체의 주연주자 또는 주발표자로 참여한 50분 이상의 공연을 100% 인정한다. 공연주체가 1명인 단독공연이거나 밴드 리더(지휘)일 경우 100% 인정한다. 공연 구성원이 4인 이하의 공연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50%,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연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30%, 10인 이상의 공연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15%, 객원 혹은 세션 공연(악기연주 및 코러스)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15%, 게스트 출연 공연(20분 미만이거나 3곡 이하)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10% 인정한다.

(차) 승진 및 재임용시 독창회, 개인발표회가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(개정 2019.3.1.)

3.봉사업적: 교육 및 연구 활동 이외에 교내▪외 및 학회 및 기타활동 관련된 업적을 의미한다.

4.종합 평가: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대상자의 교육, 연구, 봉사업역 평가결과를 수합, 평균치를 산출하며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, 종합의견을 교원업적 종합평정표에 기술한다.

## 제2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(개정2015.3.1.)

**제4조(교원업적평가위원회)**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겸무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(개정2015.3.1.)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업적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2. 관련 제 규정의 개정
3. 교원의 교육, 연구, 봉사업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위원회에 서기를 두며 관련 업무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.

⑤ 심사위원 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②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교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6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## 제3장 업적의 평가

제7조(평가기준) 교원업적평가의 기준은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한다.(개정2015.3.1.)

제8조(교육업적의 평가기준) 교육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<별표 1>에 의한다.

(별표 개정2020.3.1.)

제9조(연구업적의 평가기준) 연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2>에 의한다.

(별표 개정2019.3.1.)

제10조(봉사업적의 평가기준) 봉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3>에 의한다.

(별표 개정2020.3.1.)

제11조(교원업적 종합 평정표) 교육, 연구, 봉사업역 평가결과를 수합, 평균치를 산출 및

판정은 <별표 4>에 의한다.(별표 개정 2020.3.1)

## 제4장 업적의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2조(평가회수 및 기간) 교원업적의 평가는 2년 단위로 실시한다. 단, 위원회의 결의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실시 할 수 있다.(개정2015.3.1.)

제13조(평가대상의 업적 및 구비서류) ①평가대상의 업적은 본인이 업적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, 제출기한을 경과하거나 증빙자료 및 서류가 미비된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단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② 구비서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업적평가표(개정2015.3.1.,2019.3.1.,2020.3.1)
  - 가. 교육업적평가표<별표 1>
  - 나. 연구업적평가표<별표 2>
  - 다. 봉사업적평가표<별표 3>
2. 증빙서류
3. 기타 관련 자료

제14조(업적의 평가방법) ① 교원의 업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위원 본인이 평가대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며, 위원장이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 위원장을 대행한다.

제15조(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)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업적에 대한 실적을 교무처 업적평가조사에 의거 작성하여, 매학기 수업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위원장의 확인 검토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위원장은 매학기 수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(개정2015.3.1.)

제16조(이의신청 및 처리) 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제출서류 미비 등 평가대상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며,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그 재심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확정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제17조(평가예외) 연구 년, 장기해외연수 등의 기간에는 연구업적만을 평가하며 교육 및 봉사업적은 직전(또는 직후) 학년도의 업적으로 갈음한다.

제17조의 1(휴직예외)심사대상자의 재임용기간 중에 휴직 기간(제17조에 의한 휴직 제외)이

포함될 때에는 재임용심사 기간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심사한다.(신설 2014.9.1.)

##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기타

**제18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평가결과는 교원의 재임용, 승진임용 등의 심사에 활용한다.

**제19조(재임용 기준)**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. 단 연구업적은 교원인사규정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준한다.(개정 2012.7.21.)

직 위	평가대상기간	영역별 평점		
		교육업적	연구업적	봉사업적
조교수	최근 6년	240	600	240
부교수	최근 6년	240	600	240
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에 대하여 심의할 시 공인으로 서의 자질과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

**제20조(승진임용 기준)**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. 이 경우,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은 40% 이상이어야 한다.(개정 2012.7.21)

구분	평가대상기간	영역별 평점		
		교육업적	연구업적	봉사업적
조교수→부교수	최근 6년	240	600	240
부교수→교수	최근 6년	240	600	240

**제21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22조(준용)** ① 휴직 만료 후 복직한 교수가 휴직기간이 재임용 심사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.  
② 판결에 의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.(신설 2013.8.9.)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단, 제3조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임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.)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단, 제8조 의거 별표1 교원업적평가 항목 및 평점,

제10조에 의거 별표 3 봉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임용계약자  
부터 적용한다.)

## 별표1

피평가자 소속: 직급: 성명:

## 교육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

평가 영역 (배점)	평가 항목 (항목별 배점)	평가기준(항목별 배점) *해당 번호에 0표 할 것	확인	평가자 평점
강의(60)  *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	책임시수 비율(10)	① 기준시수 충족(10) ② 70%이상 충족 (5) ③ 70% 미만 (0)	책임시수: 담당시수:	
	휴강 및 보강(10)	① 휴강 없음: 보강 (10) ② 휴강 후 보강 없음(5) ③ 2회 이상 무단휴강(0)	1과목 임의선정 휴강 수: 보강:	
	강의계획서 제출(10)	① 전 과목 제출 (10) ② 1~2과목 미 제출(5) ③ 전 과목 미 제출 (0)	과목 수: 제출 수:	
	성적 제출(10)	① 기간 내 제출 (10) ② 1~2일 지연 (5) ③ 3일 이상 지연 (0)	기간준수: 지연일수: 일	
	학칙에 의한 성적평가(10)	① 전 조건 충족(10) ② 일부조건 충족(5) ③ 전 조건 미충족(0)	1과목 임의선정 상대: % 절대: %	
	강의 평가(10)	① 만족도 85~100(10) ② 만족도 70~84 (7) ③ 만족도 50~69 (3) ④ 만족도 0~49 (0)	1과목 임의선정 만족도 %	
학생지도 (40)  *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	신입·편입생 유치 기여도(20)	① 4명 이상 (20) ② 2~3명 (10) ③ 1명 이하 (0)	당해연도 신입생 명 편입생 명 계 명	
	재학생 지도관리(10) (지도학년: 학년)	① 재학률 90% 이상(10) ② 재학률 80~89% (5) ③ 재학률 79% 이하 (0)	직전학기 대비 재학률 %	
	진학 및 취업지도(10) (증빙자료 첨부)	① 60% 이상 (10) ② 20~59% (5) ③ 19% 이하 (0)	당해연도 졸업생 진학·취업률 %	
계 100점(해당되지 않는 항목: 총점 조정)			총점	점

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별표 1

피평가자

소속:

직급:

성명:

## 교육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2020학년도 임용계약자부터)

평가영역	평가항목		배점	평가점수	세부항목
교육내용 및 과정 (60)	강의계획서	기한내 제출	5		전과목 제출:5점 1과목 미제출:3점 2과목 미제출:1점 3과목이상 미제출:0점
	강의평가 결과	만족도 90% 이상	10		
		만족도 80% ~ 90%	7		1과목 임의 선정
		만족도 60% ~ 79%	3		매 학기당 계산 4단계 등급화
		만족도 0% ~ 59%	0		
	강의 이행 상태	휴강 및 결강	5		휴강없거나 결강신고 후 보강:5 휴강 후 보강 없음: 0점 무단 결강:-5점(한 강의당)
	강의부담	책임시수	10		학기당 책임시수 이상은 10점 학기당 책임시수에 미달시 학점 당 3점 감점
	성적평가 적절성	학칙에 의한 성적평가	5		1과목 임의 선정 전 조건 충족(10) 일부조건 충족(5) 전 조건 미충족(0) * 1과목 임의 선정
	성적입력	기한내입력	5		입력기한 초과일수*-1
	주당 수업 일수	주당 4일 이상	10		
		주당 3일	5		학기당 평균(반올림)
		주당 2일	3		
		주당 2일 미만	1		
학생지도 (40)	교육 관련 수상 및 상벌 *교육관련 수상일 경우에만 인정		10		국제 기구 및 국제단체의 수상,서훈,포상: 10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상,서훈,포상: 5점/건(10점이 상한) 공공기관,민간단체,교내 등의 수상 2점/건
			-10		종징계를 받았을 경우
			-5		경징계를 받았을 경우
	학생상담		10		학기 단위로 계산하여 상담일지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때만 인정 2명당 1점(10점이 상한)
	학내행사 참여도		5		MT.OT,졸업식,연주회,축제,세미나 등 본인이 참여현황일지를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
지도교수, 학위논문지도 취업지도	지도교수, 학위논문지도 취업지도		10		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인 경우 5점 학위논문은 석사는 1명당 2점, 박사는 1명당 5점 취업1명당 5점(10점이 상한) 증빙서류 제출
	신입 편입생 유치도		15		5명이상(15), 3명이상(10), 1명이상(5) 없음(0) 증빙서류 제출
총계			100		

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

성명 \_\_\_\_\_ 인

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

성명 \_\_\_\_\_ 인

별표 2

피평가자 소속: 직급: 성명:

##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). 인문·사회·사범계)

구 분	평 가 항 목	평가 항목(배점 %) *해당란에 ○표 할 것	확인	평가자 평점(%)
학술 논문	① 국제 학술지	① 150%	①	
	② 국내 학술지	② 100%	②	
	③ 기타 학술지	③ 50%	③	
계				

※ 기타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제외한 전공분야 학술단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논문

##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). 예능계)

구 분	평가 항목(배점 %) *해당란에 ○표 할 것	평가 기준	확인	평가자 평점(%)
개인 발표회	독주, 독창회(10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	지휘, 전곡 반주(30%)	위와 동일		
공동 발표회	전곡 중주, 전곡 중창(7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	2인 공동(50%)	위와 동일		
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	주연, 협연, 연출, 작품 발표(10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	조연(50%)	위와 동일		
국제 음악회	독주, 독창, 협연, 발표(70%)	공인 국제음악제		
종합 연주회	독주, 독창, 중주, 중창, 작품 발표, 편곡(15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합창단, 오케스트라	지휘(100%)	광역시급 이상 시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		
개인 발표회 (동일내용 두 번째)	독주, 독창(5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	지휘, 전곡 반주(15%)	위와 동일		
계				%

\* 승진 및 재임용 시 독창회, 개인 발표회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별표 2 (2019년도 임용계약자부터)

피평가자 소속: 직급: 성명:

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, 인문사회계열)

구 분	평 가 항 목	평 가 항 목(배점 %) *해당란에 O표 할 것	확인	평가자 평점(%)
학술논문(단독)	① 국제 전문학술지 ② 국내 전문학술지	① 200% ② 100%	① ②	
학술 논문 (2인 논문 주저자)	① 국제 전문학술지 ② 국내 전문학술지	① 150% ② 60%	① ②	
학술논문 (2인 논문 교신저자)	① 국제 전문학술지 ② 국내 전문학술지	① 150% ② 60%	① ②	
계				

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별표 2 (2019년 임용계약자부터)

피평가자 소속: 직급: 성명:

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). 예능계열)

1. 클래식

구 분	평가 항목(배점 %) *해당란에 0표 할 것	평가 기준	확인	평가자 평점(%)
개인 발표회	독창회, 독주회 (10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	지휘, 전곡 반주(30%)	위와 동일		
공동 발표회	전곡 중주, 전곡 중창 (7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	2인 공동(50%)	위와 동일		
	지휘, 전곡 반주(15%)	위와 동일		
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	주연, 협연, 연출, 작품 발표(10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	조연(50%)	위와 동일		
국제 음악회	독주, 독창, 협연, 발표 (70%)	공인 국제음악제		
종합 연주회	주연 및 협연(5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	독주, 독창, 중주, 중창, 작품 발표, 편곡(15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합창단, 오케스트라	지휘(100%)	광역시급 이상 시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		
개인 발표회 (동일내용 두번째)	독주, 독창(5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		
	지휘, 전곡 반주(15%)	위와 동일		
<b>계</b>				%

2. 실용음악 공연

구 분	평가 항목(배점 %) *해당란에 0표 할 것	평가 기준	확인	평가자 평점(%)
단독공연	주연주자, 주발표자 밴드리더(지휘)(100%)	50분이상 공연		
4인이하 공연	공연구성원 (50%)	위와 동일		
5인이상 9인이하	공연구성원 (30%)	위와 동일		
10인 이상	공연구성원 (15%)	위와 동일		
객원, 세션	악기연주, 코러스(15%)	위와 동일		
출연공연	게스트(10%)	20분미만 또는 3곡이하		
<b>계</b>				%

\* 승진 및 재임용 시 독창회, 개인 발표회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별표 3

피평가자: 소속: 직급: 성명:

## 봉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

평가영역(배점)	평가 항목(항목별 배점) *해당란에 O표 할 것	피평가자 평 점	확인인	평가자 평 점
교내 봉사 (50)  *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	① 처장급 이상(30) ② 학과장·연구소장급(20) ③ 각종 위원회 위원 (10) ④ 학생 지도교수(10) ⑤ 각종 회의 참석(5) (무단 불참시 회당 -5점)  * 중복되더라도 50점이 상한임	① ② ③ ④ ⑤	계 점	
교외 봉사 (20)	<b>증빙자료 첨부</b> ① 자차·공공단체 위원(10) ② 각종시험 채점위원(공인 대회, 콩쿠르 심사위원) (10)  * 중복되더라도 20점이 상한임	① ②	계 점	
학회 활동 (20)	<b>증빙자료 첨부</b> ① 학술단체·기관 임원(10) ② 학술단체·기관 회의 사회, 발표, 토론 등 (5) ③ 학술단체 회원(1학회당 5점)  * 중복되더라도 20점이 상한임	① ② ③	계 점	
기타 활동 (10)  *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	① 학사행정 협조(5)  ② 동료와의 인화관계(5)	① 5. 4. 3. 2. 1. 0.  ② 5. 4. 3. 2. 1. 0.  계 점	①  ②	
계		100		

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별표3

피평가자: 소속: 직급: 성명:  
봉사업적 평가항목, 기준 및 평점(2020학년도 임용계약자부터)

평가영역	평가항목		배점	평가점수	세부항목
교내봉사 (50점) 종복되더라도 50점이 상한	보직	처장, 대학원장	15		①보직을 경임할 경우 중복 계산하지 않고 상위 보직에만 점수를 인정함 ②연간 6개월 미만은 50%만 인정
		학과장, 관장	10		
		부설기관장, 연구소장	10		
	위원회	위원장	10		위원장 및 위원은 종복되더라도 가산점은 없음
		위원	5		
	채플	참석율	20		주간 경건회 참석률 따라 적용(매학기당) 80%이상: 20, 60%이상: 15 50%이상: 10 30%이상: 5
		참석율	20		
	교직원 기도회 및 회의참석	참석율	20		전체 교수회의, 교직원회의, 교직원기도회 등 참석율로 적용 90%이상: 20, 80%이상: 15 70%이상: 10 60%이상: 5 50%이상: 1
교외봉사 (50점) *증빙자료 첨부 종복되더라도 50점이 상한	국내외 학회 및 협회 활동	회장, 부회장 임원, 편집위원장	10		①동일학회, 협회 및 단체내에서는 종복하여 인정하지 않고 최고 점수만 부여한다.
		이사, 간사, 편집위원, 분과위원장	10		②종교단체는 개 교회를 제외한 교회협의회(체) 만 인정
		논문심사위원	10		③논문심사위원은 1회당 5점 (총 2회까지 인정). 공인대회, 콩쿠르심사위원도 1회당 5점 (총2회까지 인정)
		임원	10		④연간 20점까지만 인정
		위원	10		
		회원	5		
	언론매체 활동	T.V , 라디오 방송출연	10		①TV나 라디오출연의 경우 자막이나 음성으로 본교 교수임이 밝혀져야 점수 인정 *교회소속으로 설교방송은 불인정
		일간지, 잡지, 기고	10		②연간 20점까지만 인정
		교내소식지 및 각종 기고	5		
	사회 및 교회봉사 활동	사회봉사활동	5		①사회공익 단체나 기관에서 10시간 이상 행한 봉사만 인정, 교회봉사는 제외 ②해외 선교단체에서 사역한 봉사
		교회봉사활동	5		①협동목사, 교육목사, 교단 및 교회전문교역자, 주교부장, 성가지휘, 반주, 솔리스트, 전도사, 교사, 성가대, 기타 교회봉사 ②매주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경우만 인정 ③권사, 집사 등 직분 자체는 제외하고 시무장로는 봉사로 인정
	봉사관련 훈 장 및 포상	국가의 훈장, 대 통령, 총리, 장 관 급 상	10		
		각종 법인 기관 단체장 상	5		
기타활동 (10점) *가산점	기 타	학교홍보활동 *증빙첨부	5		교회나 단체에 학교홍보집회, 홍보세미나 및 설교, 찬양, 세미나인도, 순서자(회당1점)
		학교행정협조 *정성평가	5		학생관련 행사와 각종 학교행사참석, 학사행정 협조여부, 학교발전 기여도 등
		총계	100		

20 년 월 일      위 확인자      직급      성명 \_\_\_\_\_ 인

20 년 월 일      평가자      직급      성명 \_\_\_\_\_ 인

별표 4

### 교원업적 종합 평정표

피평정자	소속:	직급:	성명:
평가 영역		평가 결과	영역별 기준
교육업적			1년 40점 이상 6년 240점 이상
연구업적			1년 100% 이상 6년 600% 이상
봉사업적			1년 40점 이상 6년 240점 이상
<u>평가위원장의 종합 의견</u>			

20 년 월 일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\_\_\_\_\_ 인